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

2025년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예산안 검 토 보 고

■ 일 반 회 계

2024. 1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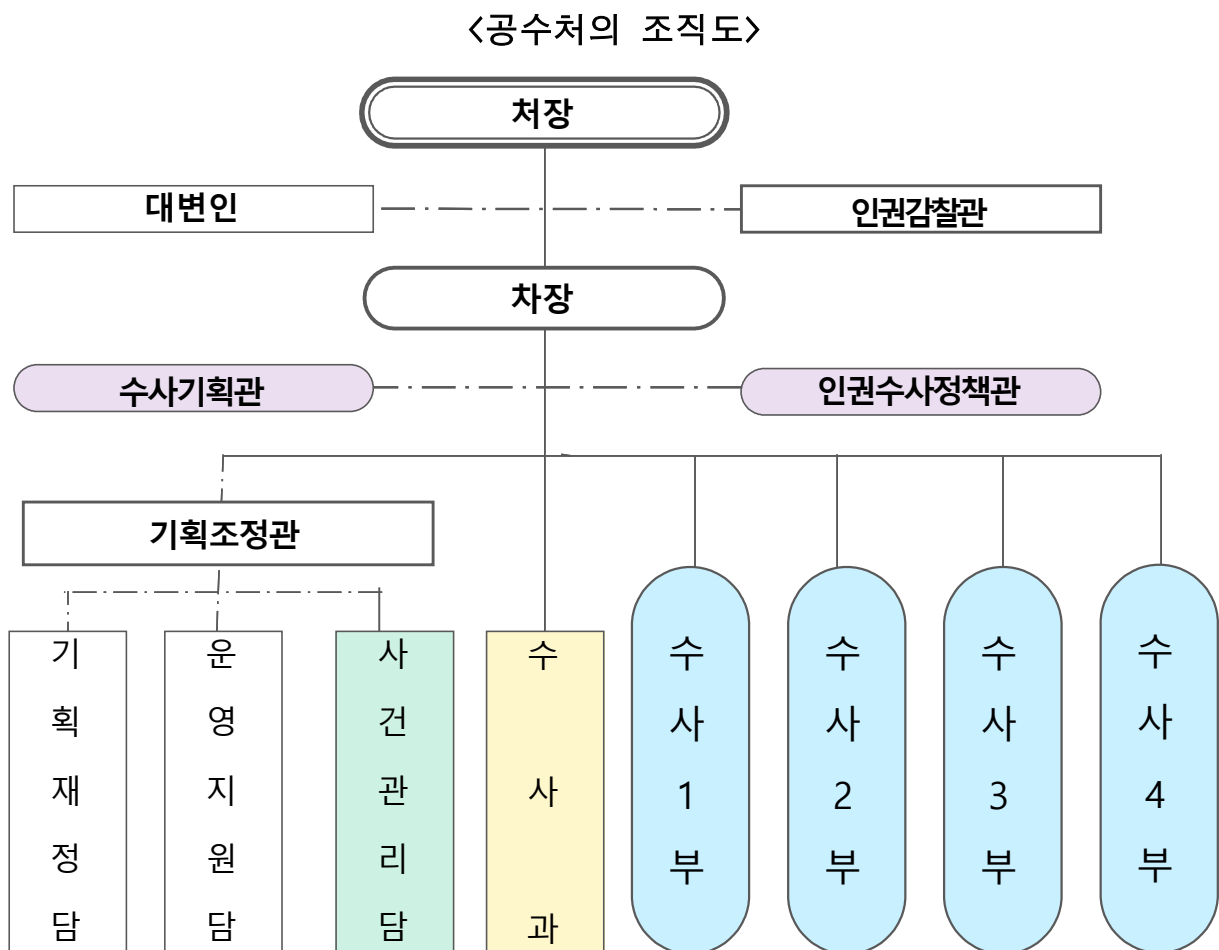
【 목 차 】

I . 개관	1
1. 조직 및 인력운용현황	1
2. 예산안 개요	5
가. 예산규모	5
나. 예산요구액 대 조정액 대비	5
3. 세출예산액 명세	7
4.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8
가. 공수처 예산 연혁	8
나. 예산안 주요 증감내역	12
다. 예산구조 분석	14
II . 검토의견	17
◆ 총괄적 검토 ◆	17
1. 수사 및 공소 관련 위원회 운영 예산의 적정성 검토	17
가. 예산안 개요	17
나. 과다편성된 위원회 예산 감액 검토 필요	20
◆ 개별사업별 검토 ◆	27
2.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1032-301)	27
가. 예산안 개요	27
나. 정책홍보비를 활용한 내부고발자 제도 실질화 노력 필요	28
다. 전문수사자문위원회 예산 편성의 필요성 논의 필요	35
3.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비총액)(7011-250)	38
가. 예산안 개요	38
나. 대용량 보안USB 구입비 탄력적 조정 필요	38

I. 개관

1. 조직 및 인력운용현황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직무 및 부정부패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판·검사 등 일부 고위공직자의 고위공직자범죄는 공소제기 및 유지까지 담당하는 기관으로, 2024년 10월 25일 기준 4관 4부 5과로 구성됨.



* 자료: 공수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0.1.14. 제정, 2020.7.15. 시행, 이하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수사처검사(제4조 및 제8조제2항)¹⁾, 40명 이내의 수사처수사관(제10조제2항)²⁾ 및 20명 이내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직원(제11조)³⁾ 등 총 85명의 정원으로 구성되는데, 2024년 10월 25일 기준 현원은 총 75명임.

〈공수처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구분	수사처검사	수사처수사관	행정직원	계
정원	25	40	20	85
현원	19	36	20	75

* 자료: 공수처

- 또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공수처 예규)」에 따라 사무보조직, 운전직, 방호직 등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직근로자⁴⁾를 두고 있음. 공무직근로자의 정원은 조직

- 1) 「공수처법」 제4조(처장·차장 등) ① 수사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고, 각각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수사처에 수사처검사와 수사처수사관 및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8조(수사처검사) ② 수사처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처장과 차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한다.
- 2) 「공수처법」 제10조(수사처수사관) ② 수사처수사관은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40명 이내로 한다. 다만, 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관을 파견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사처수사관의 정원에 포함한다.
- 3) 「공수처법」 제11조(그 밖의 직원) ① 수사처의 행정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원의 수는 20명 이내로 한다.
-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직근로자”란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3.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4. “상시적·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관리부서에서 관리하는데,⁵⁾ 2024년 10월 25일 기준으로 공수처는 공무직근로자 정원 38명 중 37명을 채용하고 있음.

〈공수처 공무직근로자의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구분	사무보조직	운전직	방호직	계
정원	26	3	9	38
현원	26	3	8	37

* 주: 2024년 10월 기준 2명이 휴직 중이라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 중

** 자료: 공수처

- 한편, 「공수처법」은 정원 내에 포함되는 검찰청 검찰수사관(제10조제2항 단서⁶⁾) 외에, 정원 외로 공수처가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규정(제44조⁷⁾)하고 있음.

2024년 10월 25일 기준 「공수처법」 제44조에 따라 공수처에 파견된 인원은 경찰(해경 포함) 2명, 지방자치단체 13명, 중앙행정기관 1명, 공공기관 3명 등 총 19명임.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5. "사용부서"란 공무직근로자·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가 소속되어 근무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공무직근로자등의 구분) ① 공무직근로자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사무보조직**: 사무보조, 민원상담, 비서, 기록물관리, 자료실 운영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운전직**: 차량 운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3. **방호직**: 방호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② 직위의 명칭은 직종별로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부여할 수 있다.

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6조(총 정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에 두는 공무직근로자등의 정원은 조직관리부서에서 관리한다.

6) 「공수처법」 제10조(수사처수사관) ② 수사처수사관은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40명 이내로 한다. 다만, 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관을 파견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사처수사관의 정원에 포함한다.

7) 「공수처법」 제44조(파견공무원) 수사처 직무의 내용과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공수처에 근무 중인 외부 파견인력 현황〉

(단위 : 명)

파견처	경찰·해경	지자체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계
인원	2	13	1	3	19

* 자료: 공수처

2. 예산안 개요

가. 예산규모

- 2025년도 공수처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음. 세입 예산안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252억 6,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5억 8,800만원(22.2%) 증액되었음.

<2025년도 공수처 소관 예산안 개요>

(단위: 백만원)

구분	2023결산	2024예산(A)	2025예산안		증감	
			요구	조정(B)	B-A	%
세입	-	-	-	-	-	-
세출	13,945	20,680	29,867	25,268	4,588	22.2

* 자료: 공수처

나. 예산요구액 대 조정액 대비

- 공수처는 당초 예산당국에 298억 6,7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요구액 대비 15.4%(45억 9,900만원)가 감액된 252억 6,800만원으로 조정되었음.
 - 정보화체계구축 및 운영 사업에서 30억 9,700만원, 첨단범죄 및 디지털 구축 사업에서 8억 3,900만원,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사업에서 3억 5,400만원 등 총 45억 9,9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조정됨.

〈2025년도 예산요구액과 조정액 명세〉

(단위: 백만원)

사업명	구분	요구액(A)	조정액(B)	증감	
				금액(B-A)	비율(%)
공수처 운영 인건비(총액)		8,968	8,659	△309	△3.4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총액)		1,933	1,933	-	-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비총액)		2,573	2,573	-	-
정보화체계 구축 및 운영		12,885	9,788	△3097	△24.0
첨단범죄 및 디지털 수사		1,694	855	△839	△49.5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1,784	1,430	△354	△19.8
공판활동지원		30	30	-	-
합 계		29,867	25,268	△4,599	△15.4

* 자료: 공수처

3. 세출예산액 명세

○ 내년도 공수처 예산안의 2024년도 예산 대비 증감비율 및 전체 예산 대비 경비별 구성비율은 다음과 같음.

- 인건비는 86억 5,900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3.3%가 증액(2억 7,800만원)되었고 전체 예산 중 34.3%를 차지함.
- 기본경비는 45억 600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3.1%가 증액(1억 1,500만원)되었고 전체 예산 중 17.8%를 차지함.
- 사업비는 4개의 사업에 총 121억 300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52.6%가 증액(41억 7,200만원)되었고 전체 예산 중 47.9%를 차지함.

〈 2025년도 세출예산안 경비별 명세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A)	2025년도 예산안(B)	증감		구성비
			금액 (B-A)	비율 (B-A)/A	
인 건 비	8,381	8,659	278	3.3	34.3
기본경비	4,369	4,506	137	3.1	17.8
사 업 비	7,931	12,103	4,172	52.6	47.9
합 계	20,680	25,268	4,588	22.2	100

* 자료: 공수처

4.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가. 공수처 예산 연혁

-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직무 및 부패 관련 범죄를 공정하게 수사하기 위하여 설치한 독립 기관으로, 2021년 1월 21일 초대 공수처 처장이 임명되면서 정식 출범하였음.
- 2021년도 공수처 예산은 2021년 1월에 기관이 출범함에 따라 전액 일반회계의 예비비로 배정·집행됨.
- 2021년도 공수처 세입예산은 없고 총 수납액은 300만원으로 징수 결정액(300만원) 대비 수납액 비율이 100%임.

〈2021년도 공수처 소관 총세입 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A)	징수결정액(B)	수납액(C)	C/A	C/B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2021년	-	3	3	-	100	-	-

- 2021년도 공수처의 세출은 232억 2,000만원이 배정되었으며, 배정액의 60.1%인 139억 4,600만원이 지출됨. 배정액의 17.0%인 39억 4,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23.0%인 53억 3,000만원은 불용됨.

〈2021년도 공수처 소관 총세출 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A)	예비비	예산현액 (B)	집행액 (C)	C/A	C/B	다음연도 이 월 액	불용액
2021년	-	23,220	23,220	13,946	-	60.1	3,944	5,330

- 2022년도 공수처 예산은 전액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로만 구성됨. 세입예산안은 없고 세출예산안은 총 7개 사업으로 199억 9,9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22년 5월 정부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공수처도 연가보상비 및 5개 경상경비 비목(일반수용비, 여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에서 총 2억 2,200만원을 감액하여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197억 7,700만원임.

〈2022년도 공수처 세출예산안 명세〉

(단위: 백만원, %)

구 분	본예산(A)	제2회 추경(B)	본예산 대비 증감	
			금액(B-A)	비율(B-A)/A
○ 인 건 비	7,828	7,816	△12	△0.2
- 공수처 운영 인건비(총액)	7,828	7,816	△12	△0.2
○ 기본경비	4,316	4,271	△45	△1.0
-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총액)	1,718	1,718	-	-
-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비총액)	2,598	2,553	△45	△1.7
○ 사 업 비	7,855	7,690	△165	△2.1
- 정보화체계 구축 및 운영	1,887	1,887	-	-
- 첨단범죄 및 디지털 수사	3,337	3,337	-	-
-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2,528	2,363	△165	△6.5
- 공판활동지원	103	103	-	-
합 계	19,999	19,777	△222	△1.1

- 2023년도 공수처 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 199억 9,900만원 대비 11.6%(△23억 1,600만원) 감소, 추경 197억 7,700만원 대비 10.6%(△20억 9,400만원) 감소한 176억 8,300만원임.

〈2023년도 공수처 세출예산안 명세〉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예산(B)	본예산 대비 증감	
	본예산(A)	추경		금액(B-A)	비율(B-A)/A
○ 인 건 비	7,828	7,816	8,161	333	4.3
－ 공수처 운영 인건비(총액)	7,828	7,816	8,161	333	4.3
○ 기본경비	4,316	4,271	4,404	88	2.0
－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총액)	1,718	1,718	1,707	△11	△0.6
－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비총액)	2,598	2,553	2,697	99	3.8
○ 사 업 비	7,855	7,690	5,118	△2,737	△34.8
－ 정보화체계 구축 및 운영	1,887	1,887	1,925	38	2.0
－ 첨단범죄 및 디지털 수사	3,337	3,337	1,170	△2,167	△64.9
－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2,528	2,363	1,970	△558	△22.1
－ 공판활동지원	103	103	53	△50	△48.5
합 계	19,999	19,777	17,683	△2,316	△11.6

- 2024년도 공수처 예산은 2023년도 예산 176억 8,300만원 대비 16.9%(29억 9,700만원) 증가한 206억 8,010만원임.

〈2024년도 공수처 세출예산안 명세〉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예산(A)	2024년 예산(B)	본예산 대비 증감	
			금액(B-A)	비율(B-A)/A
○ 인 건 비	8,161	8,381	220	2.7
- 공수처 운영 인건비(총액)	8,161	8,381	220	2.7
○ 기본경비	4,404	4,369	△ 35	△ 0.8
-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총액)	1,707	1,818	111	6.5
-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비총액)	2,697	2,551	△ 146	△ 5.4
○ 사 업 비	5,118	7,931	2,813	55.0
- 정보화체계 구축 및 운영	1,925	3,851	1,926	100.1
- 첨단범죄 및 디지털 수사	1,170	2,330	1,160	99.1
-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1,970	1,720	△ 250	△ 12.7
- 공판활동지원	53	30	△ 23	△ 43.4
합 계	17,683	20,680	2,997	16.9

- 2025년도 공수처 예산은 2024년도 예산 206억 8,010만원 대비 22.2%(45억 8,800만원) 증가한 252억 6,800만원임.

〈2025년도 공수처 소관 예산 개요〉

(단위: 백만원)

구분	2022년도 결산	2023년도 예산	2024년도 예산(A)	2025년도 예산안(B)	증감 (B-A, %)
세입	-	-	-	-	-
세출	14,366	17,683	20,680	25,268	4,588 (22.2%)

* 자료: 공수처

나. 예산안 주요 증감내역

- 공수처의 2025년도 예산안에서 세부사업 기준으로 내년도에 신규로 편성되거나 폐지되는 사업은 없음.
- 다만, 내역사업 기준으로는 “정보화체계구축 및 운영(정보화)(1031-300)” 사업에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개인정보보안솔루션’ 총 2건이 신규로 76억 100만원 편성되었음.
- 2024년 종료되는 내역사업은 “정보화체계구축 및 운영(정보화)(1031-300)” 사업에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2단계 구축’ 1건,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정보화)(1031-301)” 사업에서 ‘전자적증거보존관리시스템 구축’ 1건, 총 2건이 있음.

〈2025년도 신규 및 2024년 종료 내역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도 예산	2025년도 예산안
신규 (2건)	○ 정보화체계구축 및 운영(정보화)(1031-300)	-	7,601
	-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1차)	-	7,529
	- 개인정보보안솔루션	-	72
	합계	-	7,601
종료 (2건)	○ 정보화체계구축 및 운영(정보화)(1031-300)	1,664	-
	- 형사사법정보시스템 2단계 구축	1,664	-
	○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정보화)(1031-301)	1,593	-
	- 전자적증거보존관리시스템 구축	1,593	-
	합계	3,257	-

-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공수처의 총 7개 세부사업 중 증액사업은 4건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음.

- “공수처 운영 인건비(총액)(7001-100)” 사업은 공무원 인건비 단가 조정(+3.4%) 등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한 86억 5,900만원임.
 -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총액)(7011-200)” 사업은 공무원 인건비 단가 조정(3.5%) 및 법률사무 종사자 추가 반영(+3명) 등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한 19억 3,300만원임.
 -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비총액)(7011-250)” 사업은 사무공간 신규조성 및 이전배치 및 업무협약의 소요 증가로 인한 여비 추가 반영(+87.3%) 등으로 전년 대비 0.9% 증가한 25억 7,300만원임.
 - “정보화체계구축 및 운영(정보화)(1031-300)” 사업은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위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비 신규 반영 등으로 전년 대비 154.2% 증가한 97억 8,800만원임.
- 반면, 감액사업은 2건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음.
-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1031-301)” 사업은 전자적증거보존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종료 등으로 전년 대비 63.3% 감액한 8억 5,500만원임.
 -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1032-301)” 사업은 2023년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16.8% 감소한 14억 3,000만원임.

〈2025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명세〉

(단위: 백만원, %)

사항별	구분	2024년도 예산(B)	2025년도 예산안(B)	증감		구성비
				금액 (B-A)	비율 (B-A)/A	
○ 인 건 비		8,381	8,659	278	3.3	34.3
- 공수처 운영 인건비(총액)		8,381	8,659	278	3.3	34.3
○ 기본경비		4,369	4,506	137	3.1	17.8
-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총액)		1,818	1,933	115	6.3	7.6
-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비총액)		2,551	2,573	22	0.9	10.2
○ 사 업 비		7,931	12,103	4,172	52.6	47.9
- 정보화체계 구축 및 운영		3,851	9,788	5,937	154.2	38.7
- 첨단범죄 및 디지털 수사		2,330	855	△1,475	△63.3	3.4
-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1,720	1,430	△290	△16.9	5.7
- 공판활동지원		30	30	-	-	0.1
합 계		20,680	25,268	4,588	22.2	100.0

* 자료: 공수처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다. 예산구조 분석

- 공수처의 2025년도 예산안은 크게 공수처 활동 프로그램(1000)과 행정지원 프로그램(7000)으로 구분됨. 공수처 활동 프로그램은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사업 등 공수처의 직무 수행을 위한 사업들로 이루어지고, 행정지원 프로그램은 기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기본경비 사업으로 이루어짐.
- 공수처 소관 예산은 경상경비적 성격을 지닌 행정지원 프로그램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임. 2025년도 예산안에서 인건비가 약 87억원,

기본경비가 약 45억원으로 각각 전체 공수처 예산안의 34.3%, 17.8%를 차지함에 따라 행정지원 프로그램의 비중이 총 세출예산안의 52.1%에 달함. 이는 2024년도 예산에서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합한 경상경비 비중인 61.7%보다는 낮아졌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임.

〈공수처 2024년도 본예산 및 2025년도 예산안 경비별 비중〉

(단위: 백만원)

구분	인건비	기본경비	사업비	계
2024년도 본예산	8,381 (40.5%)	4,369 (21.1%)	7,931 (38.4%)	20,680 (100%)
2025년도 예산안	8,659 (34.3%)	4,506 (17.8%)	12,103 (47.9%)	23,268 (100%)

* 자료: 공수처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공수처의 2025년도 예산안 사업구조 및 예산액〉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공수처 활동 (12,103, 47.9%)	공수처 업무 정보화 (10,643)	정보화체계 구축 및 운영(정보화) (9,788)
		첨단범죄 및 디지털 수사(정보화) (855)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1,430)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1,430)
	공판활동 (30)	공판활동지원 (30)
행정지원 (13,165, 52.1%)	소속기관 인건비 (8,381)	공수처 운영 인건비(총액) (8,381)
	기본경비 (4,506)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총액) (1,933)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 (비총액) (2,573)

* 자료: 공수처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사업비에 해당하는 공수처 활동 프로그램의 비중은 전체 세출예산안의 47.9%임. 사업비 중에서는 정보화 사업에 해당하는 “정보화 체계 구축 및 운영(1031-300)” 사업 및 “첨단범죄 및 디지털 수사(1031-301)” 사업의 사업비를 합한 금액이 총 106억 4,300만원으로, 공수처 예산안 사업비의 87.9%(전체 세출예산안의 42.1%)임.

〈공수처 2025년도 예산안의 사업비 세부내역 및 비중〉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명	금액	사업비 중 비율	전체 세출예산안 중 비율
○ 사업비 전체		12,103	100%	47.9%
정보화 예산	정보화체계 구축 및 운영	9,788	80.9	38.7%
	첨단범죄 및 디지털 수사	855	7.0	3.4%
일반예산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1,430	11.8	5.7%
	공판활동지원	30	0.2	0.1%

* 주: 공수처 전체 세출예산안은 252억 6,800만원임

* 자료: 공수처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II. 검토의견

◆ 총괄적 검토 ◆

1. 수사 및 공소 관련 위원회 운영 예산의 적정성 검토

가. 예산안 개요

- 공수처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각종 심의·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그 중 수사와 관련하여서는 ① 수사심의위원회, ② 영장심의위원회, ③ 공보심의위원회, ④ 감찰위원회, ⑤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 등 총 5개 위원회를, 공소와 관련하여서는 “공소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공수처 산하 수사·공소 관련 위원회 현황〉

구 분	법적 근거	위원 수 (외부위원)	소집요건	심의대상
수사심의 위원회	「공수처 수사 심의위원회 운 영에 관한 지 침(공수처예 규)」	20명 이상	처장의 요청	① 직접수사 개시 여부, ②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 건 등의 수사방향, ③ 구속 영장 청구 여부, ④ 처장의 이첩요청 여부
영장심의 위원회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8) (「공수처법」 제47조에 따라 준용)	9명	사법경찰 관의 심의 신청	① 체포·구속영장, ② 압 수·수색·검증 영장, ③ 통신제한조치 허가 청구

구 분	법적 근거	위원 수 (외부위원)	소집요건	심의대상
공보심의 위원회	「공수처 사건 공보 준칙(공 수처훈령)」	15인 이하 (과반 이상)	-	① 공소제기한 사건, ② 공 소제기요구한 사건, ③ 불 기소 등 사건, ④ 수사종결 전 사건 등에 대한 공보 심의
감찰위원회	「공수처 감찰 위원회 운영 규정(공수처훈 령)」	5~9명 (3~9명)	위원장 요청 또는 처장이나 재적위원 1/3 이상 요청	① 감찰업무의 기본방향· 계획, ② 인권감찰관이 회 부한 중요 감찰사건에 필 요한 조치, ③ 비위행위 조 치기준 및 처리절차
내부고발자 구조심의 위원회	「고위공직자 범죄등 내부고 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대 통령령)」	5명 (3명)	위원장 요청	①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 ② 구조금 지급 여 부 및 지급액
공소심의 위원회	「공수처 공소 심의위원회 운 영에 관한 지 침(공수처예 규)」	10명 이상	처장의 요청	① 공소제기 여부 또는 공소제기요구 여부, ② 기 소 여부 판단의 토대가 되 는 법률·사실적 쟁점, ③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처분 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 법성, ④ 무죄판결 등에 대 한 상소 여부

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다른 법률의 준용) 그 밖에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의 이 법에 따른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검찰청법」(다만, 제4조제1항제2호·제4호·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①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위촉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공수처는 수사 및 공소 관련 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을 매년 편성하고 있음. 2025년도 예산안은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1011-301) 사업의 일반수용비(210-01)에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및 회의 자료 인쇄 등 경비(이하 “수당등”) 예산으로 전년대비 3,082만원 감액한 2,905만원을, 공판활동지원(1033-301) 사업의 일반수용비(210-01)에 전년도와 동일한 1,0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음.

〈2025년도 수사 및 공소 관련 위원회 수당등 예산안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2024 예산(A)	2025 예산안(B)	증감	
			B-A	(B-A)/A
○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1032-301)	1,719,500	1,430,000	△289,500	△16.8
· 수사 관련 위원회 운영	59,865	29,050	△30,815	△51.5
○ 공판활동지원(1033-301)	29,600	30,000	400	1.4
· 공소심의위원회 운영	10,600	10,600	-	-

*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또한, 공수처는 위원회 회의 개최를 위한 외부 회의장 임차료로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1011-301) 사업의 임차료(210-07)에 전년과 동일한 300만원을, 공판활동지원(1033-301) 사업의 임차료(210-07)에 전년대비 100만원 감액한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음.

나. 과다편성된 위원회 예산 감액 검토 필요

- 2025년도 공수처 소속 위원회 운영 예산은 다음 측면에서 감액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실제 소요 대비 과다산정된 위원회 참석등 예산을 적정 규모로 감액할 필요가 있음.

공수처는 2025년도 예산안에 수사심의위원회, 영장심의위원회 등 수사와 관련한 5개 위원회 경비를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1011-301)” 사업에, 공소심의위원회 경비를 “공판활동지원(1012-301)” 사업에 각각 계상하고 있음.

앞서 설명한바와 같이, 수사 관련 위원회는 15회 개최를 기준으로 총 2,905만원, 공소심의위원회는 6회 개최를 기준으로 총 1,060만원이 계상됨.

그런데 수사 관련 위원회의 경우, 2023년 예산액 2억 3,400만원 중 2,307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9.9%이고, 2024년의 경우에도 전년대비 예산이 70% 이상 감액되었음에도 9월말 기준 예산액 5,987만원 중 775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12.9%임. 또한, 공소심의위원회의 경우 2024년 9월말 기준 집행이 한 건도 없는 등,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함.

<공수처 운영 각 위원회의 수당등 예산 편성 및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위원회명	구분	2021	2022	2023	2024.9.**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1011-301)	수사심의위원회	편성액	81,600	49,500	49,500	-
		집행액	-	5,400	7,966	1,800
		집행률(%)	-	10.9	16.1	-
	수사자문단***	편성액	82,500	67,500	67,500	-
		집행액	-	6,000	7,600	-
		집행률(%)	0	9.2	11.3	-
	영장심의위원회	편성액	-	40,500	40,500	-
		집행액	-	-	-	1,350
		집행률(%)	-	-	-	-
	공보심의위원회	편성액	-	66,000	66,000	-
		집행액	6,567	4,966	5,300	2,800
		집행률(%)	-	7.5	8.0	-
	감찰위원회	편성액	-	4,200	4,200	-
		집행액	-	2,800	2,200	1,000
		집행률(%)	-	66.7	52.4	-
	내부고발자구조 심의위원회	편성액	-	6,300	6,300	-
		집행액	595	1,500	-	-
		집행률(%)	-	23.8	-	-
	합계	편성액	164,100	234,000	234,000	59,865
		집행액	7,162	20,666	23,066	7,750
		집행률	4.4	8.8	9.9	12.9
공판활동 지원 (1012-301)	공소심의위원회	편성액	81,600	48,000	47,925	10,600
		집행액	1,400	4,365	2,550	-
		집행률(%)	1.7	9.1	5.3	-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4년 예산부터 위원회별 구분 없이 총계로 계상

***2024. 1. 25. 수사심의위원회로 통합

2024년 9월말까지의 집행실적을 기준으로 수사 관련 위원회 수당 등의 연말 예상 집행액을 산정하면 1,033만원이며, 이는 2025년 예산편성액 2,905만원 대비 35%에 불과하여 2025년에도 집행 부진이 예상됨.

특히, 수사 관련 위원회의 개최횟수를 살펴보면, 2022년도에는 17회였으나 2023년에는 14회, 2024년은 연말까지 예상개최횟수가 8회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고, 이는 공소심의위원회도 동일함.⁹⁾

〈수사·공소 관련 위원회 개최실적〉

(단위: 회)

구분		수사심의 위원회	수사 자문단**	영장심의 위원회	공보심의 위원회	감찰 위원회	내부고발자 구조심의위	공소심의 위원회
구성 시기		‘21.6.	‘21.6.	‘21.6.	‘21.9.	‘22.9.	‘21.7.	‘21.6.
2022년	예산	15	15	15	20	2	7	16
	실적	5	4	-	5	2	1	3
2023년	예산	15	15	15	20	2	7	14
	실적	3	3	1	5	2	-	2
2024년 9월말	예산	30***						6
	실적	1	-	1	3	1	-	-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4. 1. 25. 수사심의위원회로 통합

***2024년 예산부터 위원회별 구분 없이 총계로 계상

또한, 공수처의 최근 4년간 사건접수 및 처리 현황을 보면, 2021년에 총 3,025건이 접수된 후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며, 2025년에도

9) 2022년 3회, 2023년 2회, 2024년 0회

수사 및 공소 관련 위원회의 개최횟수가 급증할 사정은 없을 것으로 보임.

〈최근 4년간 공수처 사건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건)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8월말
사건 접수	3,025	2,457	2,401	1,149
직접 처리	405	1,776	1,977	907
공소 제기	2	1	-	1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따라서, 수사 및 공소 관련 위원회 수당등은 실제 집행가능한 규모로 감액·조정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외부회의장 임차료 편성의 필요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음.

앞서 설명한바와 같이 공수처는 수사 및 공소 관련 위원회 개최를 위한 외부회의장 임차료 예산으로 각각 300만원씩 총 600만원 계상하였음.

해당 예산은 장소적 여건을 고려하여 외부위원의 회의참석을 독려하고 각 위원회 개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에 위치한 외부 회의장을 임차하려는 취지임.

그러나, 공수처는 수도권 소재 정부과천종합청사에 위치하여 공수처 내 회의장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공수처

소관 각 위원회의 개최횟수가 많지 않아 공수처 청사 내 회의장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실제로 2024년 수사 및 공소 관련 위원회의 회의개최내역을 보면, 모두 공수처 중회의실 또는 서면회의로 이루어졌고 외부회의장에서 개최된 내역은 없음.

〈2024년도 수사 및 공소 관련 위원회 개최일자 및 장소 현황〉

(단위 : 천원)

위원회명	개최일자	장소	참석위원 수 (외부위원 수)	수당 집행내역
수사심의위원회	2024. 05. 08.	공수처 중회의실	9명	참석수당 1,800
영장심의위원회	2024. 09. 24.	공수처 중회의실	9명	참석수당 1,350
공보심의위원회	2024. 04. 15.	서면	10명	참석수당 1,000
	2024. 04. 19.	서면	10명	참석수당 1,000
	2024. 07. 29.	서면	8명	참석수당 800
감찰위원회	2024. 06. 21.	공수처 중회의실	5명	참석수당 1,000
검사징계위원회	2024. 07. 01.	공수처 중회의실	4명	참석수당 800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한, 2023년도 기준 실제 민간위원의 계획인원 대비 참석인원 비율을 보면, 공수처 내 회의실에서 개최한 회의에는 평균 69%, 외부 회의장에서 개최한 회의에는 평균 58%로 공수처 내 회의의 참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¹⁰⁾ 따라서, 외부회의장을 활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수처 내 회의장을 활용하는 것이 그동안의 실적 및 예산절감 취지 등에 비추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10) 다만, 공수처는 외부회의장 회의개최 당일 악천후로 인하여 참석율이 낮았다는 입장임.

〈2023년 공수처 소관 위원회 개최 실적〉

(단위: 명, %)

위원회명	일자	장소	참석계획 (A)		참석실적 (B)		참석률 (B/A)	
			민간	정부	민간	정부	민간	정부
수사심의위원회	3.21.	공수처 대회의실	20	-	10	-	50	-
	4.26.	P호텔 강남점	20	-	12	-	60	-
	7. 3.	공수처 중회의실	20	-	15	-	75	-
수사자문단	4. 6.	P호텔 강남점	20	-	11	-	55	-
	6.26.	공수처 중회의실	21	-	16	-	76	-
	9.25.	공수처 중회의실	21	-	10	-	48	-
자문위원회	4.21.	공수처 대회의실	20	-	13	-	65	-
	7.11.	AT센터	26	-	15	-	58	-
	9. 7.	공수처 중회의실	6	-	6	-	100	-

*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와 관련하여 법제사법위원회는 2022회계연도 및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결과 공수처의 외부회의장 임차에 대하여 2차례 주
의 요구한바 있음.

<공수처 외부 회의장 임차 관련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회계연도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유형	조치대상기관
‘22 결산	외부 회의장 임차를 통한 회의 개최 지양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총괄	주의	고위 공직 자범 죄 수사 처
		지적사항	○ 공수처는 외부 회의장을 임차하여 수사자문단 및 자문위원회 회의(각 1회, 약 200만원 집행, 기본경비 내 임차료 활용)를 개최하였는데, 수도권에 소재한 공수처 내 회의장에 대한 장소적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예산집행지침은 회의장으로 각급 공공기관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외부 회의장 임차를 위한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집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한 집행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공수처는 소관 위원회 회의를 외부 회의장에서 개최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부 회의장을 임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23 결산	외부 회의장 임차를 통한 회의 개최 지양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1011-301), 공판활동지원(1012-301)	주의	고위 공직 자범 죄 수사 처
		지적사항	○ 공수처는 외부 회의장을 임차하여 수사심의위원회, 수사자문단, 자문위원회 회의를 각 1회 개최하였음. - 외부 호텔 등의 장소를 임차하여 회의를 개최할 경우 장소대여료 뿐만 아니라 음식료품 등이 임차료에 포함되어 집행되는 등 방만한 집행 우려		
		시정요구사항	○ 공수처는 불요불급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위원회 회의를 외부회의장에서 개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자료: 2022·2023회계연도 결산 법제사법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따라서, 공수처는 외부회의장 임차료 예산의 편성 필요성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음.

◆ 개별사업별 검토 ◆

2.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1032-301)

가. 예산안 개요

-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1032-301)은 공수처의 전문 수사역량 강화 및 직접수사 활동을 간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2억 9,000만원(16.9%) 감액 편성된 17억 2,000만원임.

〈2025년도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비율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1,344	1,720	1,430	△290	△16.9

*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나. 정책홍보비를 활용한 내부고발자 제도 실질화 노력 필요

- 「공수처법」 제46조제2항은 공수처가 각 기관 등의 내부고발자¹¹⁾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 및 지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대통령령인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은 제6조에서 신변안전조치, 제8조에서 포상금, 제9조에서 구조금 지급의 근거를 규정하고, 공수처 고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은 신변안전조치, 구조금, 포상금에 대한 구체적 절차와 지급기준을 규정¹²⁾하고 있음.

11) 내부고발자의 정의는 「공수처법」이나 대통령령인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공수처 고시인 「공수처 내부고발 관련 조서·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3조제1호에서 규정함.

「공수처 내부고발 관련 조서·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부고발자"란 고위공직자범죄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에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는 등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저지른 사람이 속하거나 속하였던 기관·법인·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
 - 나.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저지른 사람이 속하거나 속하였던 기관·법인·단체 등과 협약·계약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 다.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저지른 사람이 속하거나 속하였던 기관·법인·단체 등의 지도 또는 관리·감독을 받는 사람으로서 내부고발로 인하여 해당 기관·법인·단체 등으로부터 불이익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사람
 - 라. 그 밖에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저지른 사람의 기관·법인·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고위공직자범죄등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내부고발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자

12) 「공수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제3장 신변안전조치 : 제15조(신변안전조치 신청의 접수), 제16조(신변안전조치 신청 처리 등)

제5장 포상금: 제20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제21조(포상금의 신청), 제22조(의견청취)

제6장 구조금: 제23조(구조금의 지급 항목), 제24조(구조금의 신청), 제25조(구조대상가액 등), 제26조(구조금의 산정기준 등)

〈공수처의 내부고발자 보호·지원 관련 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정보제공자의 보호) ② 수사처는 내부고발자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 및 지원행위를 할 수 있다.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조(신변안전조치) ① 수사처검사는 내부고발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내부고발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내부고발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청에 따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안전조치”라 한다)를 하도록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하는 사람은 본인과 신변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보호대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 및 신청 사유 등을 적은 문서를 수사처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지체 없이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조치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수사처검사와의 협의를 거쳐 신변안전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고, 신변안전조치를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수사처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변안전조치를 한 경찰관서의 장은 신변안전조치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사처검사와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⑤ 수사처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한 사람과 보호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1. 제3항에 따라 신변안전조치가 취해진 사실
2. 제4항에 따라 신변안전조치가 해제된 사실
3. 신변안전조치의 기간이 종료된 사실

제8조(포상금) ①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저지른 사람이 내부고발로 인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을 받으면 제11조에 따른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부고발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상훈법」 등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은 제9조에 따른 구조금 및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조사·수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자가 그 조사 또는 수사사항과 관련하여 내부고발을 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 5. (생략)

③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구조금) ① 처장은 내부고발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내부고발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내부고발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청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되, 피해의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1. 중대한 경제적 손실 또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때
2. 이사·전직 등으로 비용을 지출했거나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
② 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③ 처장은 보복의 위험성, 지급대상자의 직업·신분·생활수준,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의 정도, 지출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구조금의 금액을 결정한다.
④ 처장은 구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조금 지급 신청인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조사할 수 있고,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위 규정에 따라 공수처는 2025년 예산안에서 동 사업의 일반수용비(210-01)에 특정범죄신고자, 증인, 내부고발자 등 신변보호 관련 업무 위탁비로 200만원을, 포상금(310-03)에 내부고발자 포상금 500만원, 기타보전금(310-04)에 내부고발자 치료비, 이사비 등으로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음.

〈2025년 공수처 내부고발자 지원 관련 예산 편성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세목	편성내역	세부산출근거	편성액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1032-301)	일반수용비 (210-01목)	특정범죄신고자, 증인, 내부고발자 등 신변보 호 관련 업무 위탁비	200,000원*10회	2,000
	포상금 (310-03목)	내부고발자 포상금	5,000,000원	5,000
	기타보전금 (310-04목)	내부고발자 치료비, 이사비 등	3건*1,000,000원=	3,000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그런데 2023년 및 2024년에는 내부고발자 지원 관련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않았고,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도 개최되지 않는 등 제도 활용이 없었음. 이는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내부고발자의 수 자체가 적기 때문으로, 공수처에 따르면 출범 이후 이루어진 내부고발 건 수는 2건이었고, 이 중 구조금 지원신청은 1건으로 나타났음.

〈최근 3년간 공수처 내부고발자 지원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내역〉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9월말	
	예산	집행액	예산	집행액	예산	집행액
신변보호 관련 업무 위탁비	6,000	-	6,000	-	4,000	-
내부고발자구조 심의위원회	6,300	1,500	6,300	-	-	-
내부고발자 포 상금, 치료비, 이사비 등	55,000	-	55,000	-	22,500	-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범죄는 고위공직자에 의한 증거인멸 또는 내부통제가 용이하여 수사의 난이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내부고발자로부터 수사 단서를 얻어야 할 필요성이 다른 범죄에 비해 높다고 할 것임. 따라서,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내부고발 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과 노력이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공수처는 공직사회 내부고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2022년 7월 내부고발 안내서를 발간하여 주요 정부·공공기관에 배

포하였고, 2024년에도 내부고발자 제도를 안내하기 위한 광고·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11월경 광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음.

고위공직자범죄의 내부고발자 보호 제도는 지속적인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동 제도에 대한 인식에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공수처는 홍보·교육·고발자보호 등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한편, 공수처는 동 사업의 일반수용비(210-01)에 매년 정책홍보비를 편성·집행하고 있으며, 2025년 예산안도 동일하게 1,000만원을 계상함.

〈2025년도 예산안 중 공수처 정책홍보비 편성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세목	편성내역	세부산출근거	편성액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1032-301)	일반수용비 (210-01목)	정책홍보비	10,000,000	10,000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해당 예산으로 공수처는 검사 등 채용 공고료 또는 기관 홍보영상 광고료 등을 집행하고 있음. 다만, 직원 신규채용 공고료 등은 2024년도부터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비총액) 사업의 일반수용비(210-01)에 별도로 편성·집행 중임.

〈공수처 출범 후 정책홍보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일자	집행액	집행내역	비고
1	2021-07-23	2,420	검사 채용 광고	
2	2021-07-23	605	인권감찰관 채용 광고	
3	2022-06-17	1,815	수사관 채용 광고	
4	2022-06-17	605	수사관 채용 광고	
5	2022-07-06	1,815	검사 채용 광고	
6	2022-10-11	22,000	공수처 CI 홍보영상 제작	
7	2022-11-03	1,452	검사 채용 광고	
8	2022-11-03	1,705	검사 채용 광고	
9	2022-12-12	2,420	학술대회 개최 광고	
10	2022-12-27	2,420	검사 채용 광고	
11	2023-02-20	7,000	기관 홍보영상 제작	※ 22년 예산
12	2023-03-15	2,420	검사 채용 광고	
13	2023-03-23	2,420	수사관 채용 광고	
14	2023-05-12	2,420	검사 채용 광고	
15	2023-06-05	2,420	검사 채용 광고	
16	2023-08-24	2,420	검사 채용 광고	
17	2023-10-25	18,150	기관 홍보영상 광고(서울역사 전광판)	
18	2023-10-25	12,000	기관 홍보영상 광고(유튜브 온라인)	
19	2024-06-05	1,210	수사관 채용 광고	
20	2024-06-05	1,210	수사관 채용 광고	
21	2024-06-28	2,200	공수처장 취임식 영상 제작	
22	2024-07-25	2,420	검사 채용 광고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5년도 예산안 중 공수처 직원 신규채용 신문 광고료 등 편성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세목	편성내역	세부산출근거	편성액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 (비총액) (7011-250)	일반수용비 (210-01목)	직원 신규채용 신문 광고료 등	5회*2,400,000원=	12,000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와 유사하게 범죄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조치를 두고 있는 법무부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지원 관련 홍보 및 교육 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수처는 정책홍보비를 활용하여 내부고발자 보호·지원 제도 안내 강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025년도 법무부 예산안 중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 지원 관련 홍보 예산내역〉

사업명	내역	예산액(천원)
국민생활침해 범죄 수사 (1335-303)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 지원 관련 홍 보 동영상 등 제작	44,500

*자료: 법무부

〈2025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예산안 중 공익신고제도 교육 예산내역〉

사업명	내역	예산액(천원)
공익신고제도운영 (1136-365)	공공, 민간기업 대상 교육자료 제작	10,000
	업무매뉴얼, 안내책자, 리플릿 등 제작	5,000
	합계	15,000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다. 전문수사자문위원회 예산 편성의 필요성 논의 필요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¹³⁾ 및 제245조의3¹⁴⁾은 전문수사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음. 전문수사자문위원이란 검사가 수사에 함에 있어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경우 지정된 전문가가 수사에 참여하여 자문하는 제도임. 이는 검사가 의료, 첨단산업분야, 지적재산권, 국제금융, 안전사고 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나 공소제기와 관련된 사실관계 판단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임.¹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도 제7조에서 공수처 소속 검사 및 수사관의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공수처는 2023년 5월 2일 공수처훈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문수사위원 운영규칙」을 제정·

- 13)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 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하여 수사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자문을 들을 수 있다.
② 전문수사자문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14) 「형사소송법」 제245조의3(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 ① 제245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수사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검사는 각 사건마다 1인 이상의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한다.
② 검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에 대하여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 및 지정취소,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 수당지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15) 박일환·김희옥, 「주석 형사소송법 (Ⅱ)」, 2017, 456.p 이하

시행하였고, 2024년 예산부터 동 사업의 일반수용비(210-01)에 전문수사자문위원 자문료 2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5년 예산안에도 동일하게 240만 원을 계상함.

〈2025년도 예산안 중 전문수사자문위원 자문료 편성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세목	편성내역	세부산출근거	편성액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1032-301)	일반수용비 (210-01목)	전문수사자문위원 자문료	1명*12회*200,000원=	2,400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그런데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제2조에 따라 우선 전문수사자문위원 후보자를 선정하여 그 명단을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4년 9월 말까지도 전문수사자문위원 후보자를 선정하지 않는 등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제2조(전문수사자문위원 후보자 관리) ① <u>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전문수사자문위원 후보자를 선정하여 그 명단을 관리한다.</u> ② 처장은 전문수사자문위원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기관, 공공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에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수사자문위원 후보자를 명단에 추가하거나 그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 제3조(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 ① <u>검사는 수사 진행, 구속영장 청구, 사건(향고사건을 포함한다)의 처리 등 수사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u>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권이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구두 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결정서로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하여 수사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전문수사자문위원은 관련 서류를 검토하거나, 피의자·피해자 또는 그 밖의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 자리에 동석하는 등 수사절차에 참여하여 설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사실을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두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로 알려야 한다.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을 위한 공수처훈령이 제정되고 약 1년 5개월동안 전문수사자문위원 후보자 선정을 하지 않은 것은 제도운영의 필요성이 낮은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예산의 필요성 여부를 재고할 필요가 있음.¹⁶⁾

16) 이와 관련하여 공수처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의 수사과정에 해당 분야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공수처 수사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2024. 11. 전문수사자문위원이 필요한 수사분야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수사부서 요청 시 해당분야 전문가를 추천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3.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비총액)(7011-250)

가. 예산안 개요

-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비총액) 사업(7011-250)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업무 수행, 기관 유지 등 원활한 기관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2,200만원(0.9%) 증액된 25억 7,300만원임.

〈2025년도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비총액) 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비율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비총액)	2,089	2,551	2,573	22	△0.9

*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나. 대용량 보안USB 구입비 탄력적 조정 필요

- 공수처는 수사기관으로써 수사 관련 자료의 유통 시 내부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USB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수사 관련 자료가 점점 대용량화 되고 있음에도 공수처가 운용 중인 보안USB는 적은 용량(16G)으로 인하여 대용량 수사자료(녹취, 이미지, 영상 등)에 대한 백업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보임.

이에 공수처는 2025년 예산안에 동 사업의 일반수용비(210-01)로

대용량(256G) 보안USB 90개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 총 2,520만 원을 계상하였음.

〈2025년도 예산안 중 대용량 보안USB 자문료 편성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세목	편성내역	세부산출근거	편성액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 (비충액) (7011-250)	일반수용비 (210-01목)	보안USB 구입	90대*280,000원=	25,200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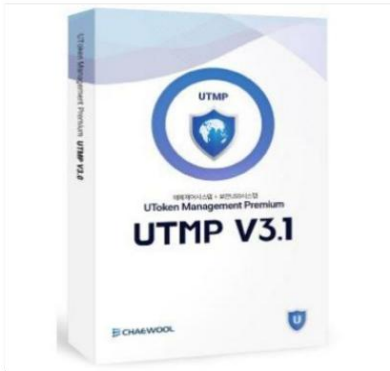
〈대용량 보안USB 개요〉

상용S/W

소프트웨어

- 개발 및 제작 S/W
- 교육용 S/W
- 데이터베이스 및 경영관리 S/W
- 보안 및 백신S/W
- 사무용 S/W
- 산업 및 응용과학S/W
- 시스템 및 운영체제S/W

유지/지원



보안소프트웨어

업체명	주식회사 채울	계약자/공급자 정보조회
계약방법	3자단계계약	
규격명	보안소프트웨어, 채울, UTMP V3.1, 보안USB제어솔루션, 1Agent(Max:256G)	
가격	280,000 원	다량납품할인을 확인
단위	조	
원산지	대한민국	
제조사	주식회사 채울	
납품장소	수요기관지정장소	

○ 가격 : 조달청 쇼핑몰 기준 280,000원(세부물품번호 : 4323320501)

○ 기능

- 보안USB 내 데이터 반출·입 통제
- 외부 저장 매체 및 통신 매체 등 장치 접근 통제
- 보안USB 정보 관리 및 정책 설정 등 보안USB 관리
- PC 에이전트 관리 및 사용자 관리 등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그런데 현재 공수처 정원 85명 중 검사 및 수사관은 총 65명이고, 수사 관련 부서의 정원은 58명, 현원은 52명인바, 수사 관련 부서에 근무하지 않는 인원은 대용량 수사자료의 저장·전송 등을 위한 대용량USB를 지급할 필요성은 낮다고 보임.

〈공수처 검사·수사관·행정직원 정·현원 현황〉

(‘24. 9월말 기준)

구 분	정 원	현 원
계	85	75
검 사	25	19
수 사 관	40	36
행 정 직 원	20	20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부서별 직원 현황〉

(2024.10.25. 기준, 단위: 명)

부서	정원	현원			
		검사	수사관	행정직	계
처장실	2	1	-	1	2
차장실	1	1	-	-	1
대변인실	3	-	1	1	2
인권감찰관실	4	-	-	1	1
기획조정관실	1	-	-	1	1
기획재정담당관실	6	-	1	6	7
운영지원담당관실	10	-	-	8	8
사건관리담당관실	58	16	34	2	52
수사기획관실					
인권수사정책관실					
수사과					
수사1부					
수사2부					
수사3부					
공소부					
계	85	18	36	20	74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따라서, 공수처가 대용량 보안USB의 소요량을 단순히 정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과다계상으로 보이므로, 각 부서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한 실제 소요량에 맞추어 예산 역시 적정 규모로 감액·조정할 필요가 있음.